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신고되는 예술인 권리침해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하여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사건의 조사 및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인력이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어 분쟁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예술인 권리침해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하는 업무에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지원 업무를 추가함(안 제19조 제3호)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조정의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의 지원 업무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분쟁조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u> <u>분쟁조정의 지원</u>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권리보호과	
연 락 처	(044) 203 - 2728